

## 2018학년도 제2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18. 1. 16. (화) 10:00
2. 장소 : 행정관 중회의실
3. 참석 위원(총9명 중 7명 참석)
  - 가. 교직원대표 : 위원장 한승준 기획처장, 하성호 경영기획팀장
  - 나. 학생대표 : 강해인 총학생회장, 봉수민 부총학생회장, 신민경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다. 외부전문가 : 김문규 회계사
  - 라. 동문대표 : 박에스더 총동창회장
4. 불참위원(2명) : 최혜지 학생처장, 박영미 회계사
5. 안건
  - 가. 2017학년도 추가경정자금 예산(안) 심의
  - 나.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및 자금예산(안) 심의
  - 다. 2018학년도 잉여금 처리 심사
  - 라. 적립금 항목 조정
  - 마. 기타 안건

### 1. 2017학년도 추가경정자금 예산(안) 심의 및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및 자금예산(안) 심의

하성호 위원(경영기획팀장)이 지난 1차 회의 이후 법인전입금 수입이 1억5천5백만원 증가하여 수정된 2017학년도 추가경정자금예산(안) 내역을 설명하다. (본예산 대비 4,681,899천원이 증가한 98,000,685천원), 2018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자금예산(안) 및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금은 2018학년도 본예산 비등록금회계에 반영하였음을 설명하다(학부 입학금은 전년대비 16% 인하, 학부 수업료 및 대학원 등록금은 동결, 2018학년도 자금예산은 109,559,468천원)

한승준 위원장 : 2017학년도 추가경정자금 예산(안) 수정 내용을 제외한 안건에 대하여는 1차 회의와 동일함을 확인하고 위원들에게 기타 추가적인 의견을 묻다.

박에스더 위원 : 법인전입금이 증가한 이유는?

한승준 위원장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대비 법인의 책무성과 관련하여 늘어났다.

박에스더 위원 : 법인의 책무성과 관련하여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

한승준 위원장 : 그렇다.

박에스더 위원 : 교내 구성원 전체가 법인에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이번 법인전입금 증가와 관련하여 법인의 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승준 위원장 : 법인은 기부금 수입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다.

강해인 위원 : 1차 회의록을 아직 확인 받지 못했다. 2차 회의록을 포함하여 빠른 시간 내에 확인 할 수 있도록 바란다.

하성호 위원 : 최대한 빨리 정리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봉수민 위원 : 2017학년도 퇴임 교원이 있는가?

하성호 위원 : 2017학년도 1학기에 2명이 퇴직했고, 2학기에는 1명 예정이다.

강해인 위원 : 모두 정교수인가?

하성호 위원 : 전임교원이다.

강해인 위원 : 학과 1인당 실험실습비는?

하성호 위원 : 학부 및 대학원 그리고 각 계열 별 단가에 따라 책정되어 있다. 이 외에 교육용 기기 구입비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

강해인 위원 : 인문·사회계열에 비하여 미술계열의 단가가 높은 것은 이해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성호 위원 : 인문·사회계열과 자연 및 미술계열의 등록금이 차이난다. 계열별 수업 형태에 따라 실습비가 책정된다. 인문·사회계열 보다 자연 및 미술계열에 실험실습 관련 수업이 더 많아 높은 단가로 책정한다.

강해인 위원 : 대학로캠퍼스 운영 계획이 있는가?

한승준 위원장 : 학교 홍보 또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대학로 캠퍼스 매각도 고민 하고 있다.

봉수민 위원 : 본 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하고 회의 개최 이유가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2차로 회의가 종료되는 것이 아닌 회의가 추가 개최 되었으면 한다. 매월 개최하는 학교도 있다. 이사회 심의 전까지 1회 추가 개최 요청한다.

하성호 위원 : 논의 안건이 있을 경우 본 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 과반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타 대학에 비하여 개최 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위원회 추가 개최보다는 차후에 심의할 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 소집하는 것은 어떤가? 논의해야 할 안건이 있는가?

박에스더 위원 : 논의해야 할 안건이 있을 경우 지금 의견을 주면 좋겠다. 예전에 본 위원도 추가 위원회 개최 의견을 표한바 있다. 우리 대학의 경우 타 대학과 차이가 있다. 논의 안건이 있을 경우 지금 논의 하면 좋겠다.

강해인 위원 : 임기 시작 후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충분히 전달 받지 못했다. 중요한 자료를 어제 수령하여 충분히 분석 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앞

으로 어떻게 집행할지를 심의해야하기에 예산서를 통해 추정해왔다. 2017학년도 회계 내역을 심의할 시간이 적었다.

한승준 위원장 : 지난 학년도 결산 자료는 미리 제출했다. 어떤 결산자료를 어제 받았다고 하는 건가?

강해인 위원 : 2017학년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이다. 2017년 3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사용 내역이다.

한승준 위원장 : 기존의 자료와 어제 제출한 자료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성호 위원 : 추가경정자금 예산 편성 시 당해 연도 자금을 어떻게 사용 했는지 검토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이다. 2016학년도 결산서 자료를 확인했는가? 학교에서는 신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동일 사업을 진행한다. 다만 수입과 사업에 따라 증감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고정적인 지출이 많다. 2017학년도 가결산 자료를 요청하고 중간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자료 분석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추가 개최하는 것 보다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경영기획팀으로 요청하기 바란다. 본 회의는 등록금 책정과 2017학년도 추가경정자금예산과 2018학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므로 이 내용을 논의하면 좋겠다.

강해인 위원 : 등록금 책정과 예산 심의에 대하여 결산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결산이 가능하지 않다. 자금계산서와 등록금 책정에는 긴밀한 연관이 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학생 위원에게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학생들을 대표하여 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2차로 종료하지 않고 충분한 심의를 위해 추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

한승준 위원장 : 개최와 관련해서는 규정에 따라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이 가능하다. 제안을 할 경우 이에 대하여 찬반 진행할 수 있다.

박에스더 위원 : 2018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인상을 할 경우 추가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 또는 특별한 내용이 있을 경우 개최를 해야 한다. 3년 이상 등록금이 동결 되었다. 특별한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아닌 개최 횟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하면 소집 요구는 어렵다. 특별한 안건이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 학생 위원이 검토 후 요청해야할 내용이 있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회의를 추가로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강해인 위원 : 등록금 인상이 아닌 것도 다행이다. 하지만 학생입장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학생지원 예산을 더 편성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이 등록금 동결 뿐 아니라 학생 지원이 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승준 위원장 : 가결산 자료의 어떤 예산 항목이 조정되길 원하는가?

강해인 위원 : 안건을 언급할 경우 3차 회의를 1월 23일 가능한가?

한승준 위원장 : 안건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위원들이 찬성을 해야 한다.

박에스더 위원 : 오늘 차기 회의에 대한 여지를 두고 총학생회에서 검토 후 학생들에게

혜택이 될 부분을 보완하여 추가 회의 개최를 요청하면 어떨까? 지금 차기 회의 일정을 결정하기에는 구체적인 안건이 없다.

학생위원이 학생대표(학부) 요구안 자료를 배부하고 요구안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정의학원’은 법정부담전입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학교’는 재정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승준위원장 : 그 요구는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 왔다. 법인의 역할과 재정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회의록에 명시하면 될 것이다. 이 내용은 법인에 요청하는 것이지 주된 회의 안건은 아니다.

하성호 위원 : 질의서 중 납부해야하는 32억은 어떻게 책정되었는가?

봉수민 위원 : 대학알리미에서 학교 규모에 따라 책정된 법인이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으로 알고 있다.

하성호 위원 : 법인전입금 중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게 될 경우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2. 전임교원 부족문제, 폐강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이 부족한 과의 교원확충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

하성호 위원 : 교원 충원 예산은 학과에 배정하는 것이 아닌 교원인사를 담당하는 교무팀에 배정하고, 이후 보수 예산은 관련 부서에 예산을 편성한다. 교원의 채용에 관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논의 할 안건은 아니다. 일부 학과의 교원 충원에 대한 부분은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생지원팀을 통하여 별도로 요구하면 된다.

3-1. 바롬 예산 중 2,000만원을 바롬3 학생지원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하성호 위원 : 바롬 예산 중 2천만 원의 별도 예산 지원은 본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안건은 아니며 해당 교육을 실제로 운영하는 바롬인성교육원 교학실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 본 내용도 총학생회에서 학생지원팀을 통하여 해당 교학실과 협의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면 된다. 예산을 심의하는 본 위원회의 기능과는 다르다.

3-2. 바롬 예산 중 바롬관 수질 개선과 대청소 비용을 추가 편성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하성호 위원 : 수질검사서의 경우 양호하다고 안내를 했다. 마시는 물외의 다른 수질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은 기관실과 협의해야 할 내용이다. 다른 수질 쪽에 문제가 있는지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다.

2018학년도 청소 예산 및 2017학년도 청소 일정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청소 관련 예산 추가 편성 요구는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될 것 같다.

3-3. 바름 운영규칙(기간, 규칙, 생활 등)과 교육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하성호 위원 : 해당 내용은 본 위원회와 별도의 내용이다. 학생지원팀을 통하여 바름인성 교육원 교학실과 협의하면 된다.

4. 운영비-행사비, 기타운영비 축소 / 예비비 축소 / 과도한 적립금 축소로 학생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하성호 위원 : 행사는 각 부서의 사업 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행사의 내용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다. 현재의 예산은 각 부서와 경영기획팀이 조정한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조정이 불가하다.

기타운영비의 기타라는 의미가 부정적일 수 있다.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운영비가 아닌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비의 기타운영비라는 '항목' 이다. 본 예산도 조정한 금액이며 일률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2018년 본예산에서는 2017년 대비 감소했다. 재정지원사업의 예산이 추경예산에는 반영되므로 증가한다.

예비비도 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이다.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예산으로 본예산에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거나 추경을 진행하려면 장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로 일정 부분 예비비를 편성한다. 본예산에서 4억 원 책정이유는 1년을 고려한 것이며, 추경 예산은 잔여기간을 감안하여 2억 원이 편성된다. 미사용 시 교비회계로 편입된다.

임의특정목적기금 적립이 2018본예산에 160억 원인 이유는 건축기금 150억 원을 전용하는 것으로 실제 적립금액은 10억 원이다. 예년에 비해 적립기금은 줄었다. 또한 임의특정목적기금은 기부금 수입을 적립하는 것으로 기부자의 의견에 따라 당해 연도 사용 시 해당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목적을 지정할 경우 당해 연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하는 것이 아닌 적립하는 것이다.

5. 난방비 예산을 2017년도 수준으로라도 책정하고, 전액 집행해야 한다.

하성호 위원 : 난방비 예산의 경우 매년 잔액이 발생한다. 난방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한파 등의 영향으로 예비비성 예산을 편성한다. 또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난방을 가동하는 것이 아닌 난방 정책(외기 온도 10도 이하, 야간은 계속)에 따라 가동한다. 난방비 예산은 교내 구성원이 상호 협조하여 절감해야할 부분이다.

6. 본예산에서 조정하여 집행하는 '추가경정예산' , 집행이 다 끝난 후 심의 받는 것이 아니라 2학기에 심의 받을 수 있도록 학기 중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하성호 위원 :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끝난 후 심의하는 것이 아닌 지금 본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고 동의를 해야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하고 집행한다. 우리 대학의 경우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조정 작업을 진행한다. 정리된 내용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안건이 상정된 것이다. 2학기

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자금 집행 검토가 필요할 경우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개최되면 된다.

7. 학생들은 학교 운영의 약 57%를 감당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금 책정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위원 1인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추가해야 한다.

하성호 위원 : 학생 1인 추가는 제1차 회의 때 타 위원이 언급 한 것처럼 현 구성이 상호 견제 및 균형적인 것이다. 학생 위원 1인 추가 요구는 비율에 따라 다른 위원도 추가되어야 한다. 위촉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총장 결재 사항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승준 위원장 : 6번의 위원회 추가 개최 요구 및 7번의 학생 위원 1인 추가 내용은 회의록에 남기고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

강해인 위원 : 2번 요구안은 교원 확충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내용이다.

하성호 위원 : 2018학년도 충원 예정 교원의 예산은 보수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한승준 위원장 : 2018학년도 2학기에 교수 초빙할 경우 2019학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된다.

강해인 위원 : 현 교수 충원 예정인 학과는 학생들이 시급하다고 요구하는 학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과의 교원을 충원해 달라는 내용이며 교원충원이 시급한 학과들이 있기에 이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성호 위원 : 교원 확충 예산이 필요할 경우 2018년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 교원 확충은 교무팀에서 교원 인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논의 진행이 필요하다. 교수 충원이 결정되면 예산 증액은 이에 수반되는 사항이다.

강해인 위원 : 2018학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고 해당 위원회가 개최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2017년 학생들의 시위 과정의 요구내용 및 총장신문고를 통하여 교수 충원이 예정된 학과 이외에 최소 2개 학과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해당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학생들의 요구가 충분히 검증되었다.

하성호 위원 : 아니다. 교수 충원에 대한 부분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학생들의 요구가 있다면 이를 검토하여 교원 충원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고 결정이 되어야 한다. 본 위원회에서는 충원 인원을 반영하여 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한승준 위원장 : 교원 충원은 본 위원회가 아닌 교무위원회에서 논의 되어야 한다.

강해인 위원 : 교원 충원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 퇴임 교원에 대한 신입교원 충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는 것이다.

하성호 위원 : 본 위원회는 교원인사권이 없다.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므로 본 회의록에 요구 내용으로 작성하겠다.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생 요구를 수합하고 학생지

원팀을 통하여 관련 부서에 해당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면 된다.

강해인 위원 : 퇴임 교원의 예산이 없어졌으니 해당 예산을 충원해 달라는 이야기 이다.

하성호 위원 : 예산은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예산에 전년도 퇴직교원에 대한 보수 부분을 반영해 달라는 것은 예산편성의 지침 상 맞지 않다.

강해인 위원 : 요구안에 기재된 내용과 구두로 언급한 “그만큼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는 전달이 약간 차이가 있다. 과장해서 구두로 언급했다고 생각해 주고, 요구안 대로 교원확충 예산을 추가편성해 달라는 요구이다.

박에스더 위원 : 학생 위원 요구 내용인 교원 충원은 예산 심의하는 본위원회가 아니라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뜻인가? 충원이 될 경우 2018학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이 가능하다는 뜻인가?

하성호 위원 : 그렇다.

강해인 위원 : 교원 충원에 대한 학생 요구가 받아 들여 질 경우 추경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는 뜻인가? 의지가 있는가?

박에스더 위원 : 교무위원회 등의 관련 절차에 따라 교원 충원 결정 시 예산은 시스템적으로 편성한다. 의지의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강해인 위원 :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므로 등록금 책정하는 지금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지금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

하성호 위원 : 예산은 교원 충원과 계획에 따라 편성된다. 요구 내용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사업 계획이 필요한데 현재 그렇지 않다. 총학생회의 의사 표현은 학생지원팀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2학기 신입교원 충원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필요 시 2018학년도 추경 예산에 편성하면 된다.

방수민 위원 : 학생의 요구(안)은 전임교원의 확충이 필요하니 교수 충원에 대한 필요가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고 추가적으로 학과발전계획 및 교수 초빙 계획을 수립할 때 이에 대하여 같이 논의해 주면 좋겠다.

하성호 위원 : 요구하는 의견은 학생지원팀을 통하여 관련 부서에 전달하면 된다. 또한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겠다.

한승준 위원장 : 2018학년도에는 학생지원팀과 총학생회가 더 많은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안다.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부서에 전달되도록 하면 된다.

강해인 위원 : 바롬3 학생지원 예산 2천만 원 추가 편성은 교학실과 협의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본 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가결 산상으로 사용하지 않은, 즉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항목 예를 들면 행사비 예산 등을 이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는 것이다. 행사비 예산의 경우 2017추경예산에서 1억2천만 원 중 8천만 원만 사용하였다. 4천만 원이 사용되지 않았다.

하성호 위원 : 졸업식과 입학식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비등록금회계의 기금모금행사

2,400만 원 및 기타행사경비 약 1,500만 원 정도가 계획되어 있다. 가결산 자료를 볼 경우 예산 잔액이 많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2018년 1~2월 사업 계획을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결산 후 예산이 남을 수는 있으나 예산 편성 시 부족하게 편성할 수 없다. 또 학교가 비상사태이므로 배정된 예산이라도 최대한 절약하고 있다. 이렇게 운영됨에 따라 결산서상에 예산 잔액이 남을 수 있다. 개별 항목별 집행율에 대하여 언급할 경우 회의 진행이 어렵다. 추경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계수 조정 시에 편성된 예산으로 이해하면 된다.

한승준 위원장 : 학생 대표 위원의 의견 중 바름3 예산의 경우 학교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처음 듣는 이야기이다. 예산 편성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 된다.

위원장이 학생지원팀장에게 학생 위원이 요청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다.

김홍석 학생지원팀장 : 총학생회와 학생지원팀이 함께 논의하여 해당 내용을 관련 부서에 전달되도록 하겠다.

한승준 위원장 : 학생들의 의견과 문제 제시가 타당하다고 본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겠다.

강해인 위원 : 난방비의 추경 예산액은 4억 8천만 원 편성되었고, 집행은 50%정도 되었다. 남아 있는 기간에 전체 예산 집행이 가능한가?

한승준 위원장 : 편성된 예산 내에서 전체 집행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인가?

강해인 위원 : 편성된 예산 내에서 소진 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하성호 위원 : 예산 편성과는 관련 없는 난방 정책에 대한 요구로 접수하겠다.

강해인 위원 : 예산 편성을 늘려달라는 요구이다.

하성호 위원 : 12월부터 2월까지의 난방비가 제일 많이 지출된다. 난방비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편성 된 예산 내에서 좀 더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뜻인가?

강해인 위원 : 맞다. 난방비가 2017년 본예산 대비 2018년 본예산에서 예산이 줄었다.

하성호 위원 : 주관 부서에서 예측하여 난방비 예산을 책정한다. 예산을 더 편성하였으므로 난방을 더 한다는 것이 아닌 위에서 언급한 데로 난방 정책에 따라 운영이 되므로 총학생회에서 주관 부서에 난방을 더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 이에 따라 난방 정책이 반영되고 난방비 예산이 증감될 수 있다.

박에스더 위원 : 난방비를 더 사용할 수 있다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공의 장소에 집중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강해인 위원 : 난방비 예산에서 2017년 본예산 대비 2018년 본예산에서 1억 줄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성호 위원 : 2017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그 당시의 난방 관련 정책 및 환경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 2017년 추경 예산 편성은 실제로 난방을 시행하고 잔여기간을 예측

하여 예산을 삭감했다. 2018학년도 본예산은 2017 추경 예상으로 난방비 예산을 편성한다. 2018학년도 유가인상 등의 대외적인 환경이 바뀌면 2018학년도 추경예산에서 난방비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강해인 위원 : 바롬인성교육관의 수질검사 보고서를 받았다. 상하수도의 수질검사는 없고 음용수의 수질검사 보고서만 있다. 편성 예산이 약 6만 원 정도 된다.

박에스더 위원 : 상하수도 수질은 서울시의 수도관과 관련이 없는가? 독립된 것인가?

한승준 위원장 : 바롬인성교육관 수질과 관련 된 내용은 예산과 관계없이 주관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고 개선 될 수 있을 것 같다.

강해인 위원 : 상하수도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 건축팀에 관련 예산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이 될지 의문이 든다.

위원장이 학생지원팀장에게 학생 위원이 문의 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다.

김홍석 학생지원팀장 : 기관실을 통하여 탱크 관련 검사 내용은 받았는가? 예산을 적게 편성하여 집행한 것이 아니라 그 비용만 청구되어 집행했다. 학생지원팀과 별도로 논의 하도록 하겠다.

강해인 위원 : 수질 검사에 대하여 논의 하겠다는 뜻인가?

김홍석 학생지원팀장 : 기관실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이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약속하겠다.

봉수민 위원 : 사업 계획에 변동이 생길 경우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가? 사업계획 변동이 생겨 추경 예산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는 선집행이 된다고 이해된다. 추경예산의 시기가 10월부터 12월까지라고 들었다. 어떤 항목은 미리 추경예산을 받아서 집행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가?

하성호 위원 : 관련 법령에 예산의 전용이라는 내용이 있다. 절차에 따라 추경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라도 예산을 전용 할 수 있다. 이렇게 전용 된 예산과 추가 변동 부분이 반영 된 모든 사항이 추가경정자금 예산이다.

봉수민 위원 : 추경예산 심의 하는 시기가 차 년도 1월이다.

한승준 위원장 : 요구 사항의 6번 질문과 관련되는 것 같다. 2018학년도 2학기에 위원회 개최 필요 시 구성 요건이 될 경우 개최 하도록 하면 된다.

강해인 위원 :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선결 조건 내용 확인 요청 한다.

한승준 위원장 : 본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 과반수 요구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강해인 위원 : 추경예산 심의를 위하여 10월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개최의 약속을 할 수 있는가? 과반수가 안 될 수 있으므로 개최에 대한 약속을 해 달라.

박에스더 위원 : 추경 심의를 1월에 하는데 선집행이 된다는 의미인가? 그럴 경우에는 본 위원회 개최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

하성호 위원 : 추가경정자금 예산 심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학기 중 전용처리 된 예산과

기말에 사업 변동에 따라 증감되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다. 학기 중 위원회 개최가 불필요한 것은 추가경정 자금예산을 편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해인 위원 : 바롬 예산 2천만 원 증액을 요청하였다. 기타운영비에 추경 예산이 9억 원 편성되었다. 2억4천만 원 정도 집행되지 않은 예산 중 바롬 예산과 수질검사 비용으로 추가 편성 요청한다. 바롬 교육 기간이 길다는 의견이 있다. 청결문제도 지적 된다. 음용수와 물탱크만 청소하고 있다고 했다. 편성된 예산이 적다. 수질검사 비용을 위한 추가 예산이 편성되면 좋겠다. 집행되지 않은 예산중 이 예산으로 사용 될 수 있다고 본다.

박에스더 위원 : 총학생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충분히 학교에 전달 된 것으로 본다. 학생들 요구 중에 바롬교육 폐지 의견은 총동창회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유감이다. 이 바롬 교육이라는 보화를 후배들이 자기의 것으로 다듬고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 졸업하고 난 후 나에게 좋은 자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학생 시절에는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결코 학생들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의 질적인 부분이다. 교육의 방법에 대하여는 학생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롬교육의 정체성이나 내용은 우리 학교의 근간이다. 그 교육의 질적인 부분이 잘 못된다고 지적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다. 학교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동문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롬교육 폐지보다 교육을 개선해달라고 하면 좋겠다. 2가지 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 보완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강해인 위원 : 교육의 질이 더 높아져야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바롬3에 대한 2천만 원 추가 예산 편성에 대한 확답 요구이다.

한승준 위원장 : 문제의 지적은 공감할 수 있다. 2천만 원의 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결과에 대하여는 학생대표에게도 전달하고 한 번에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학생지원팀을 통하여 요구해 달라.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예산 및 교육의 질을 보완하겠다.

위원장이 학부 입학금 16% 인하와 학부 수업료 및 대학원 등록금 동결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다. 이에 모두 동의하다.

## 2. 잉여금 처리 심의

강해인 위원 : 잉여금에 대한 내용은 등록금회계만 되어있는데 비등록금회계의 경우는?

하성호 위원 : 비등록금회계의 경우에도 등록금회계와 큰 차이는 없다. 명시/사고 이월 등 목적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직접 교육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다음 년도로 이월되어 운영비로 사용되거나 일부분은 적립된다.

강해인 위원 : 교육비 예산으로 편성되는데 어떤 관,항,목으로 보면 되는가?

하성호 위원 : 자금예산서의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의 운영경비와 목적이 정확  
하게 명기되면 기계기구로 사용될 수 있다. 목적이 정해진 것에 따라 다르다.

강해인 위원 : 교육비 예산내의 세부 사용은 어떻게 되는가?

하성호 위원 : 목적이 정해진 경우 해당 내용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전체 예산에 편성되  
어서 사용된다. 가급적 학생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잉여금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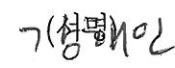
### 3. 적립금 항목 조정

강해인 위원 : 특정목적적립금으로 150억 원을 전용한다. 이 중에 일부를 학생지원비용  
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성호 위원 : 예산의 경우 예산을 먼저 배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정  
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기에 학생지원비용으로 먼저 정할 수는 없다.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적립금 항목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묻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다.

2018년 1월 16일

|     |      |                                                                                       |
|-----|------|---------------------------------------------------------------------------------------|
| 위원장 | 한승준  |  |
| 위원  | 하성호  |  |
| 위원  | 강해인  |  |
| 위원  | 봉수민  |  |
| 위원  | 신민경  |  |
| 위원  | 김문규  |  |
| 위원  | 박에스더 |  |
| 기록  | 차은호  |  |